수용자 전화사용에 관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유의사항

Ⅰ 배 경

❍ 수용자 전화사용에 관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용자 전화통화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Ⅱ 수용자 전화 운영 세부 내용

□ 전화 허용 횟수·통화시간 (시행규칙 제25조, 제90조, 제156조)

❍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화 허용 횟수·통화시간 적용 (붙임1)

※ 자치처우(자율, 중간처우 포함) 수형자는 횟수 제한 없음

구분	S1급	S2급	S3급	S4급	사형확정자	미 결
횟수(월)	20회 이내	10회 이내	5회 이내	특히필요시2회이내	필요시 3회 이내	2회 이내

□ 전화 허용 횟수 추가 범위 (시행규칙 제90조, 제59조의5)

❍ 전화 인센티브 부여

- 형집행법 제106조(포상)에 해당하거나 수용생활 모범수용자

※ 예시) 그린카드, 교육·작업 우수자 시상 등

- 취사장 등 기피 작업장 또는 운영지원 작업장 수형자

❍ 벌금 납부 등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 **전화 허용 횟수 추가 범위 등은 기관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추가 절차 : 담당근무자 또는 팀장 추천 → 보고문 결재(과장 전결) 또는 내부결재**

□ 1일 전화 사용 횟수 (시행규칙 제90조)

❍ 1일 1회 실시

※ 자치처우(자율, 중간처우 포함) 수형자 1일 횟수 제한 없음

※ 전화 끊김 등 오류 대책인 '전화 재다이얼(1분이내 1회 재통화)'은 기존대로 운영

□ 전화 수신자 범위 (시행규칙 제29조의2)

❍ 범위 및 인원

(원칙) 가족[1] 범위에서 5명 이내
(예외) 필요시 소장 허가로 지인*등록 또는 수신자 추가 가능

* 지인은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장이 허가

※ 자치처우(자율, 중간처우 포함) 수형자는 수신자 인원 20명

❍ 등록(변경) 방법 : 소장 허가

(가족) 가족관계증명서+이용계약증명서(붙임2)+제3자 정보제공동의

→ 소장허가로 간주, 자동 등록

(지인) 접견이력+소장허가(보고문)+이용계약증명서(붙임2)+제3자 정보제공동의

→ 전화담당자가 등록

※ 해당 교정기관 또는 인근 교정기관 방문 등록이 원칙, 단, 고령·학업·질병 등으로 교정기관 방문이 어렵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 할 수 있는 경우 (소명자료 필요), 우편,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등록 가능

1) 가족의 범위는 스마트 접견 민원인에 준용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등의 관한 지침 제126조(접견 민원인)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스마트접견을 하게 할 수 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전 수용자 적용**

’23. 9. 1. 제5차 시범운영 경과규정에 따라, 위 수신자 범위를 적용하지 않았던 **기존 수형자에 대해서도 ‘가족 범위 5명 이내’ 의 수신자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가족관계 확인 작업 실시** (단, 업무 부담 등을 고려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

※ 수신자 범위·인원에 대해 전 수용자에게 한 번에 적용하기 어려워 경과규정 둠. 기존 미결수용자는 ’23. 9.부터 각 기관별 일정 시간을 가지고 가족확인 절차 진행 중

□ 통화내용의 청취 · 녹음 등 (시행규칙 제28조)

❍ 형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통화내용 청취・녹음

※ 형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수신자(안내멘트), 수용자(안내화면)에게 청취·녹음 사전 고지

※ 녹음된 통화내용에 대한 사후 청취 가능

❍ 전화통화정보취급자(수용자 전화 담당) 지정

- 전화 녹음 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
- 직무상 알게 된 전화통화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전화통화정보취급자(수용자 전화 담당)가 전화 녹음기록물 제공

- 법원・수사기관 제출 요청 (시행령 제62조 제4항)
- 전화 녹음기록물 제공 절차, **접견기록물 제공 절차 준용** (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8호,「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 녹음 기록물 관리프로그램은 현재 부재하여 개발 요청 예정

□ 전화 수신자 등록/전화번호 변경 시 유의사항 (시행규칙 제25조)

❍ 전화 수신자 신규 등록, 기존 전화번호 변경 시,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등록하는 문제**

(기존) 본인 전화번호 유무 확인 절차 부재

→ (변경) 이용계약증명서(붙임2) 로 본인 휴대폰 여부 확인*

* 확인 후 민원인에게 교부 (예외적인 사유로 우편, 팩스 접수 시 확인 후 파기)

* 고령, 장애인 등 민원인의 경우, 이용계약증명서 외의 방법으로 본인 휴대폰 여부 확인 가능 (직접 전화 거는 방법 등)

III 행정사항

❍ (소속기관)

[보안과]

-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전화 허용 횟수 등 변경

※ 각 기관 수용자 전화 담당자는 '23. 2. 29. 17:00 ~ 24:00에 전화 허용 횟수 등 설정 변경

- 수용자 공중전화 사용 자체 계획 수립
- 수용자 안내방송 실시 (붙임3)
- 수용동 및 작업장에 안내문 게시

[민원(총무)과]

- 민원인에게 전화 수신자 등록 및 전화번호 변경 방법 안내

붙임 1 **수용자 전화 운영 개요**

□ 수용자 전화 운영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허용횟수	S1급	월 20회 이내	· 자치제 수형자는 횟수 제한 없음 · S1급 ~ S3급 :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 허용횟수 늘릴 수 있음
	S2급	월 10회 이내	
	S3급	월 5회 이내	
	S4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사형확정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 3회 이내	
	미 결	월 2회 이내	
수신자	범 위	가족 원칙, 예외적 지인	· 전 수용자 적용 ▸경과 규정 두었던 '23.9.1. 이전 수형자에 대해서도 가족 원칙 적용
	등록방법	(가족) 가족관계확인 (지인) 소장허가	
	변경방법	소장허가	· 지인 등록, 변경은 소장허가 필요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만 가능)
	인 원	5명 이내	· 자치제 수형자 20명 유지
1일 허용횟수		1회	· 자치제 수형자는 1일 횟수 제한없음 ·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1일 허용횟수 추가 가능
통화시간		5분 이내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

□ 기타 수용자 전화 횟수

구 분	위원회 의결 前	위원회 의결 後
분류심사 대상자	특히 필요시, 2회 (S4급)	의결된 경비처우급*
분류심사 유예자		유예사유 소멸 후 의결된 경비처우급*
분류심사 제외자		월 5회 (S3급 준용)
분류심사 거부자		특히 필요시, 2회 (S4급)
순수노역☘	월 5회 (S3급 준용 · 편입)	

*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의결된 경비처우급의 처우는 의결일 다음 날부터 실시

붙임 2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 전화 수신자 신규 등록 또는 전화번호 변경 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등록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

☐ **이용계약 증명서 (예시)**

❍ 통신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SKT: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KT: '원부증명서', LGU+: '가입 확인서' 등 통신사마다 명칭이 다름

❍ 홈페이지, 팩스, 대리점 및 고객센터 방문, PASS앱 등 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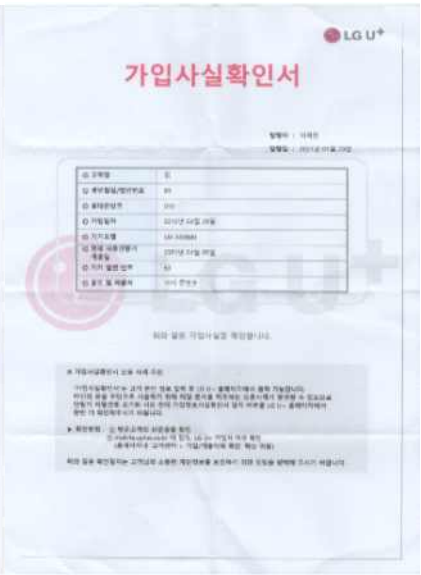
※ 발급 방법은 민원인이 직접 가입 통신사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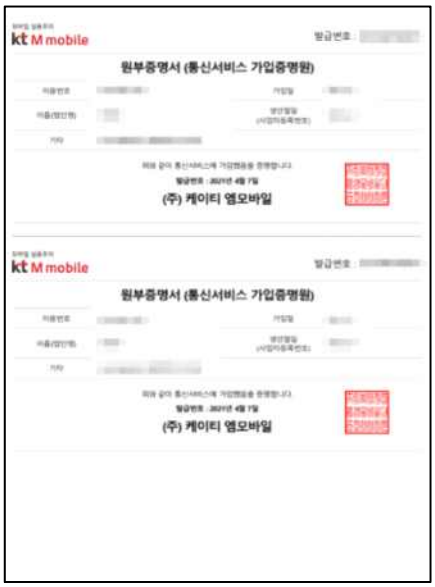
SKT 통신사 -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KT 통신사 - 원부 증명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서)



LGU+ 통신사 - 가입 사실 확인서







붙임 3 **수용자 전화 안내방송문**

수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정본부에서는 수용자 여러분의 가족관계 유지·강화 등을 위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개정, 24년 3월 1일부터 변경된 전화 횟수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횟수의 경우, S1급은 월 20회 이내, S2급은 월 10회 이내, S3급은 월 5회 이내, S4급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사형확정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 3회 이내, 미결수용자는 월 2회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수신자의 경우, 가족 범위 5인 이내의 등록된 수신자에 대해서만 전화통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가족과의 전화 통화를 위해 가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아직 가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족이 있는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및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를 지참하여 인근 교정기관 민원실에 방문하여 가족 확인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신자 신규 등록 외에 전화번호 변경 요청 시에도 본인 전화번호 여부 확인을 위해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